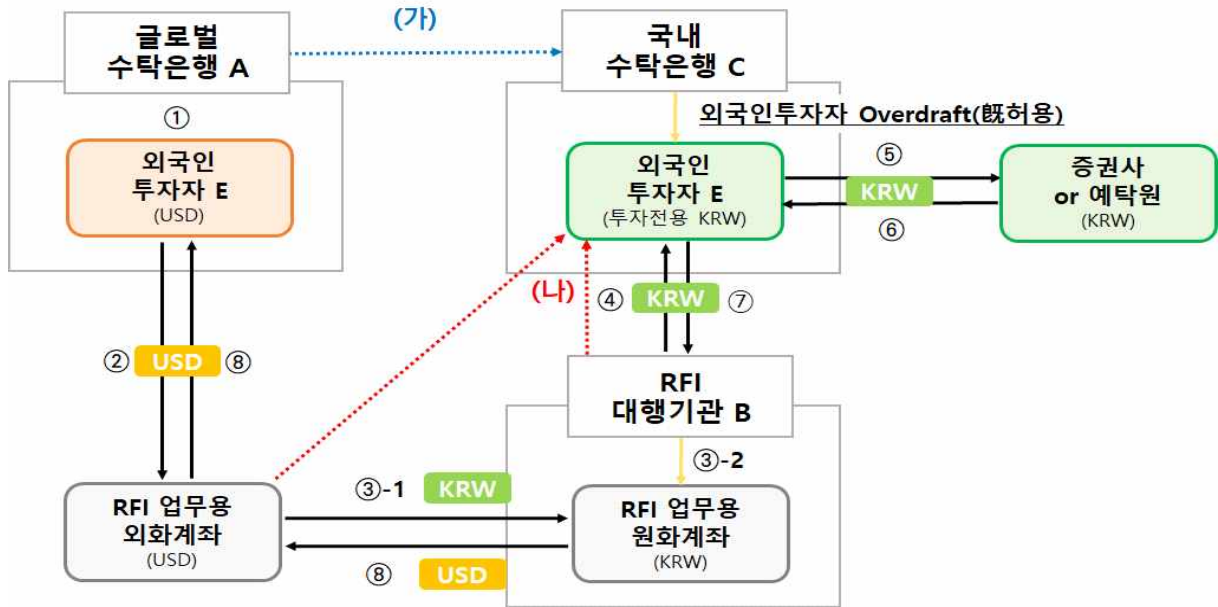


RFI 결제흐름도 및 절차별 확인의무



주요 내용	확인 의무		
	RFI	대행기관	국내 수탁
① 고객은 RFI와 외환거래 계약을 완료하고, 자금배분정보를 글로벌 수탁은행·RFI에 전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FI: 은행간시장에서 고객 물량 거래 글로벌: 국내 수탁은행에 자금배분정보^(가) 전달 	명의 (비거주자)	-	-
②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RFI 업무용 외화계좌로 송금	명의 (비거주자)	-	-
③-1 RFI가 은행간시장에서 조달한 원화자금을 RFI 업무용 원화계좌에 예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FI: 국내 수탁은행에 정보^(나) 전달(사전협의완료시) 	명의 (비거주자)	-	-
③-2 RFI가 대행기관에서 원화차입(필요시)	결제목적	결제목적	-
④ RFI가 업무용 원화계좌에서 국내 수탁은행의 투자자 명의 투자전용계정으로 원화송금 ¹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행: 국내 수탁은행에 자금배분정보^(나) 전달 	명의 (비거주자)	명의 (비거주자) 투전계정별 송금	명의 (비거주자) (가)=(나) 일치 확인
⑤ 국내 수탁은행은 증권결제를 위해 고객 명의 투자전용계정에서 증권사/예탁원 계정으로 송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객: 국내 수탁은행에서 Overdraft 가능(필요시) 	-	-	송금처
⑥ 국내 수탁은행은 고객 명의 투자전용계정에 증권매매 차익 및 배당소득을 입금	-	-	자금출처 (④ + 자본·배당소득)
⑦ 국내 수탁은행은 고객 요청에 따라 투자전용계정의 원화를 RFI 영업용 원화계좌로 송금 ¹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FI: 은행간시장에서 고객 물량 거래 	명의 (비거주자)	명의 (비거주자)	명의 (비거주자)
⑧ RFI는 은행간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업무용 외화계좌에 예치한 후, 고객에게 외화 송금	명의	-	-

1) 대행기관이 국내 수탁은행에 개설된 업무 처리 목적의 원화계정 또는 한은에 개설된 지준계좌로 외환거래 금액 전체를 송·수금하는 방식도 허용

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 (24. 5. 16일)

1. RFI 체크리스트

- ① RFI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환거래를 요청한 고객의 신원(거주성), 계좌정보 및 자금배분 정보를 확인
 - ① 고객이 「외국환거래법」 상 비거주자인지 투자자 식별번호(IRC) 또는 LEI 정보를 통해 확인
 - ② 고객이 “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”을 어느 외국환은행에 개설(계좌번호 포함)하였는지, 각 계정 명의를 고객 명의(IRC 또는 LEI)와 일치하는지 확인
 - * (예) 고객(외국인투자자)이 국내 계좌개설 은행(국내 수탁은행)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으로부터 계좌 관련 증빙서류 요청 후 RFI에 제출
 - 이후 거래 과정에서 계정이 변경된 경우(신규 개설, 폐지 등) RFI에 추가 통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객에 공지할 필요
 - * 계좌정보 확인은 최초 1회로 충분하며, 계좌정보 변경이 없다면 추가 확인 불요
 - ③ 고객으로부터 펀드별(IRC별) 자금배분 정보 수령
- ② RFI는 펀드별(IRC별) 자금배분 정보를 대행기관을 통해^(나) 고객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 개설된 은행(국내 수탁은행)에 제공
 - * 대행기관을 통하는 경우 결제일 이전에 대행기관에 자금배분 정보 전달 필요
 - 글로벌 수탁은행, RFI, 대행기관, 국내 수탁은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그룹 소속이거나 기관들 간 사전 협의된 경우, 자기책임 원칙 하에 확인절차 생략·변경도 가능
- ③ RFI는 원화자금의 송·수금 및 외화자금의 송·수금이 거래 조건에 맞는 고객, 글로벌 수탁은행, 국내 수탁은행, 대행기관, 은행간 거래 상대방 등과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*
 - * 상호 간 협의(계약)를 통해 RFI의 의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
- ④ RFI는 대행기관으로부터 결제 실패 통보를 받은 경우, 고객을 통해 받은 정보에 이상 없는지 재확인

2. 대행기관 체크리스트

- ① 대행기관은 RFI로부터 받은 정보^(나)를 국내 수탁은행에 사전 송부
 - RFI와 국내 수탁은행 간 협의된 경우, RFI가 직접 국내 수탁은행에 자금배분 정보를 송부하는 방법도 가능
- ②-1 대행기관은 고객이 외화를 대가로 원화를 매입하는 경우, RFI 지급지시에 따라 고객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원화자금 송금
 - 대행기관이 국내 수탁은행에 개설된 업무처리 목적의 원화계정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지준계좌로 외환거래 금액 전체를 송금하는 방식도 허용
- ②-2 대행기관은 고객이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, RFI 업무용 원화계좌에 국내 수탁은행이 송금하는 원화자금 수령
 - 대행기관이 국내 수탁은행의 업무처리 목적의 원화계정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지준계좌로부터 외환거래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도 허용
- ③ 대행기관은 RFI로부터 자금배분 정보^(나)와 지급지시 정보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국내 수탁은행에 송·수금 가능
 - 대행기관은 RFI의 지급지시 및 자금배분 정보^(나) 전달* 요청 외에 배분정보^(나)와 지급지시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부담하지 않음
 - * RFI가 직접 자금배분 정보를 국내 수탁은행에 제공한 경우는 제외
- ④ 대행기관은 국내 수탁은행으로부터 자금결제 실패 통보를 받은 경우, 이 사실을 RFI에게 통보하여야 함
- ⑤ 대행기관은 결제 오류, 일시적 원화유동성 문제로 RFI가 고객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, RFI에 원화 대출 가능

3. 글로벌 수탁은행 체크리스트

- ① 글로벌 수탁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거래 및 자금배분 정보를 수령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전달^(가)
- ② 글로벌 수탁은행은 국내 수탁은행으로부터 ^(가)≠^(나)를 전달 받은 경우, 고객을 통해 받은 정보에 이상 없는지 재확인

4. 국내 수탁은행 체크리스트

- ① 글로벌 수탁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(가)에 따라 RFI 대행 기관에서 받은 자금을 고객 계좌에 배분하거나, RFI의 영업용 계좌로 송금하되, RFI·대행기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
 - (가)=(나)인 경우, 국내 수탁은행은 결제를 완료하고 대행기관에도 결제 완료 사실을 전화·메일 등으로 통보
 - (가)≠(나)인 경우, 국내 수탁은행은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고객 자금의 펀드별 배분, 전체 거래금액 등을 재확인
- ② 국내 수탁은행은 증권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결제 실패 우려*가 있는 경우, 고객에 대한 Overdraft 실시 가능(규정 §2-6조③항)
 - * 증권매수 時: 증권 결제(매수) 실패 / 증권매도 時: 외환거래 결제 실패
 - 증권매매와의 관련성은 “실제 원화 관련 거래가 있는지”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관련 거래 없는 Overdraft는 불가능
 - * (예) RFI-고객 간 관련 외환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, 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의 결제일과 동일한 날짜에 국내 증권의 매도 자금이 입금될 예정인 경우
 - 대행기관이 국내 수탁은행에 송금한 총액과 펀드별(IRC별) 결제금액 총합 또는 구성이 일치하지 않더라도,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일부 펀드별(IRC별) 결제는 가능

5. 투자자 체크리스트

- ① 투자자는 (가)=(나)가 될 수 있도록 RFI와 글로벌 수탁은행에 동일한 거래대금 총액 및 자금배분 정보 전달(결제일 이전)
- ② 투자자는 RFI를 통한 외환거래 대금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, 국내 수탁은행을 통해 Overdraft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수탁은행과 협의 진행(자율)
- ③ 투자자는 글로벌 수탁은행 및 RFI가 결제 실패를 통보한 경우,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재확인